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7.] [고용노동부령 제261호, 2019. 7. 26., 일부개정]

- 제1조(목적)
-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 제6조(적립금의 산정)
-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 제8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제9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 제1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 제11조(취급실적의 제출)
- 제12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7.] [고용노동부령 제261호, 2019. 7.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 - 202 - 7556,75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법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설정하는 사용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6.>

1.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6.>
 1.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준부담금: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2. 보충부담금: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3. 특별부담금: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영 제7조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이하 "기초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 ③ 기초율은 3년마다 산출하되, 부담금의 기초가 된 기초율이 실제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 ④ 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
- ⑤ 예상이율을 제외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이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재 등으로 경험통계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경험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 ⑥ 제1항제2호의 보충부담금은 10년 이내에 충당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기초율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합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3.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4.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영 제32조에 따른 교육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17. 12. 18.]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조(적립금의 산정)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時價) 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 이하 또는 100분의 110 이상이 될 때에는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산정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적금 등 특정시점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것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은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7. 26.>

1.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3. 23.>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과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 3. 23.>

제1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영 제36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다.

제11조(취급실적의 제출)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대표자·주소·재무상황 및 경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사업,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립금 운용사항. 이 경우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급여 지급사항. 이 경우 급여 종류별 지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취급실적은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9.>

1.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
2.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2. 19.>

제12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2.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전문개정 2019. 7. 26.]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2017년 1월 1일
- [전문개정 2016. 10. 20.]

부칙 <제63호, 2012.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 2014. 12. 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 2015. 3. 23.>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 2015.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 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호, 2016. 10. 20.>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 2017. 12. 1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 2018. 12. 19.>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 2019.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6. 4. 28.>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가. 영 제2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나. 영 제2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후 미시정 시 등록취소 등록취소
2. 법 제3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라. 법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고 또는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 법 제3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바.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변경·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후 미시정 시 등록취소 등록취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후 미시정 시 등록취소 등록취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후 미시정 시 등록취소

비고

1.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기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 표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인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보며,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3. 위 표 제2호라목 또는 바목의 경우에는 2년 이내 각 해당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 확정기여형
[] 혼합형

* 뒤쪽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내용	사업명(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주산품)	
	상시 근로자 수	명	노동조합원 수	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Fax)번호	
	퇴직급여제도 형 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뒤쪽 참조) ☐ 퇴직금제도 ※ 해당 사업(사업장)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합니다.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 월 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 (신고 / 변경)합니다.

III
II
I

신고인(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의 경우] 1.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대표의 동의서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변경 통보의 경우] 1.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대표의 동의서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로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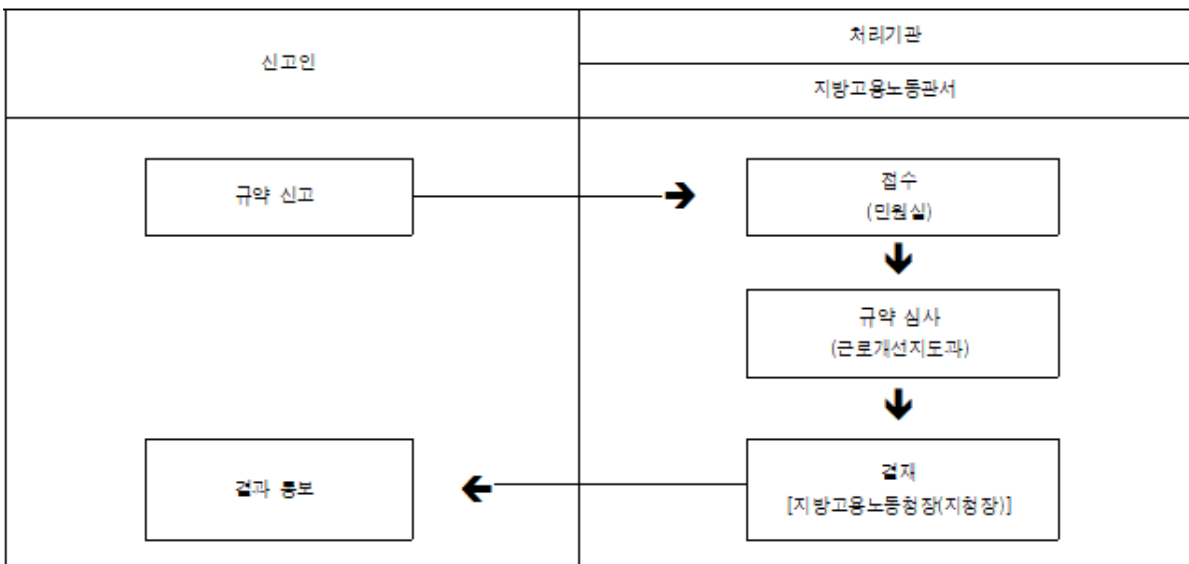
(뒤쪽)

작성요령

1. "사업명(사업장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2. "대표자 성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명을 적습니다.
3. "업종(주산품)"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란에는 「연 근무인원」÷「연 사업장 가동 일수」를 적습니다.
5. "노동조합원 수"란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수를 적고,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주소"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란에는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업무 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팩스(Fax)번호"란에는 사업장의 문서 수신이 가능한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9. "퇴직급여제도 형태"란은 신고(신규/변경) 후 해당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합니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한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가 두 제도를 각각 설정하고 가입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두 제도에 가입되는 기간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란에는 신고(신규/변경)하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11.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26.>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 확정기여형
☐ 혼합형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내용	사업명(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주산품)					
	상시 근로자 수 명			노동조합원 수 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Fax)번호					
	퇴직급여제도 형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취족 참조) ☐ 퇴직금제도 ※ 해당 사업(사업장)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합니다.							
	폐지한 퇴직연 금 제도 형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취족 참조) ※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에 모두 표시합니다.							
	제 도 폐 지 사 유	☐ 퇴직금제도로 환원 / ☐ 폐업 / 기타()							
	제 도 폐 지 일			년		월		일	
	등 의 일			년		월		일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 당 사업(사업장)의 적립금액			(원)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 당 사업(사업장)의 미납 부담금액			(원)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납입 예정일								
	해소방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
연금제도 폐지를 신고합니다.

Case	Time	Location
1	1998	...
2	1999	...
3	2000	...
4	2001	...
5	2002	...
6	2003	...
7	2004	...
8	2005	...
9	2006	...
10	2007	...
11	2008	...
12	2009	...
13	2010	...
14	2011	...
15	2012	...
16	2013	...
17	2014	...
18	2015	...
19	2016	...
20	2017	...
21	2018	...
22	2019	...
23	2020	...
24	2021	...
25	2022	...
26	2023	...
27	2024	...
28	2025	...
29	2026	...
30	2027	...
31	2028	...
32	2029	...
33	2030	...
34	2031	...
35	2032	...
36	2033	...
37	2034	...
38	2035	...
39	2036	...
40	2037	...
41	2038	...
42	2039	...
43	2040	...
44	2041	...
45	2042	...
46	2043	...
47	2044	...
48	2045	...
49	2046	...
50	2047	...
51	2048	...
52	2049	...
53	2050	...
54	2051	...
55	2052	...
56	2053	...
57	2054	...
58	2055	...
59	2056	...
60	2057	...
61	2058	...
62	2059	...
63	2060	...
64	2061	...
65	2062	...
66	2063	...
67	2064	...
68	2065	...
69	2066	...
70	2067	...
71	2068	...
72	2069	...
73	2070	...
74	2071	...
75	2072	...
76	2073	...
77	2074	...
78	2075	...
79	2076	...
80	2077	...
81	2078	...
82	2079	...
83	2080	...
84	2081	...
85	2082	...
86	2083	...
87	2084	...
88	2085	...
89	2086	...
90	2087	...
91	2088	...
92	2089	...
93	2090	...
94	2091	...
95	2092	...
96	2093	...
97	2094	...
98	2095	...
99	2096	...
100	2097	...
101	2098	...
102	2099	...
103	2100	...
104	2101	...
105	2102	...
106	2103	...
107	2104	...
108	2105	...
109	2106	...
110	2107	...
111	2108	...
112	2109	...
113	2110	...
114	2111	...
115	2112	...
116	2113	...
117	2114	...
118	2115	...
119	2116	...
120	2117	...
121	2118	...
122	2119	...
123	2120	...
124	2121	...
125	2122	...
126	2123	...
127	2124	...
128	2125	...
129	2126	...
130	2127	...

신고인(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신고인 철부서류	1.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2.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등의 불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임·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요령

1. "사업명(사업장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2. "대표자 성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명을 적습니다.
3. "업종(주산품)"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란에는 $\{(\text{연 근무인원}) \div [(\text{연 사업(사업장) 가동 일수})]\}$ 를 적습니다.
5. "노동조합원 수"란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수를 적고, 없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6. "주소"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란에는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업무 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팩스(Fax)번호"란에는 사업장의 문서 수신이 가능한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9. "퇴직급여제도 형태"란은 폐지 이전에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적용되던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표시합니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일정 비율로 함께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가 두 제도를 각각 설정하고 가입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두 제도에 가입되는 기간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제도 폐지일"란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정한 날을 적으며, 이 신고서는 폐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동의일"란에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12.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적립금액"란에는 확정급여형(혼합형제도 내 확정급여형 포함)퇴직연금제도의 제도 폐지일 기준 (예상)적립금액을 적습니다.
13.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미납 부담금액"란에는 확정급여형(혼합형제도 내 확정급여형 포함)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적고, 확정기여형(혼합형제도 내 확정기여형 포함)퇴직연금제도의 제도 폐지일 기준 미납 부담금액을 적되,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